

분류기호	기수 30092	기 안 용 지	사 행 상
문서번호	362 ~ 3817	(전화: 362 ~ 3817)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 · 종 ^영 구. 10. 5. 3. 1.	서 장	
수신처 보존기간	주 영구		
시행일자	87. 3. 20.		
보 조 기 관	기수과장 전경 용지제작	협 조 기 관	문서통제
기안책임자	김 성춘 300	치수지장 (中)	경찰 1987. 3. 20 증제판
경 유 수 신 참 조	한국가스공사·법조장 방재과장	발 신 명 의	발송인
제 목	하천의 점용 (가스관 매설) 기간 연장허가		
<p>1. 방재 30071 ~ 409 (87. 3. 7.) 허가 관련임.</p> <p>2. 한국가스공사 사장 문희성이 제출한 강남구 청담동 175-1 번지선 ~ 송동구 자양동 60 번지선간 (한강) 하천의 점용 (가스관 매설) 기간 연장 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허가 되었으니. 이에 따라 절차를 취하고, 허가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할것이며. 사후 관리와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할것.</p>			
부 주 : 기간연장 허가증서 1부. 품.			

1505-25(2-1) 일(1)갑
85. 9. 9. 증인

0036

190mm × 268mm 인쇄용지 2급 60g / m²
가 40-41 1986. 7. 4.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청

총괄 30072-101X (755-1502)

1987. 3. 16

수신 서울특별시장

제목 하천의점용(가스관 매설) 기간연장 허가

1. 치수 01251-250 (87. 3. 11)의 관련입니다.

2. 한국가스공사 사장 문희성 이 제출한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75-1번지선-성동구 자양동 60번지선간(한강) 하천의점용(가스관매설) 기간
연장 허가 신청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허가 하였으니 허가증서를 신청인
에게 교부 하시고 이에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함은 물론 하천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기간연장 허가증서 1부.



선결			결재	처수과장
접수일시 (12)	1987. 3. 18 시 분	번호 545	(공 람)	총리계장
처리과		1178		처수계장

서 울 지 방 국 토 관 리



0037

하천의 접용(가스관·매설) 기관연장

허가증서

서울 지 189-1호

피해자	한국 가스공사 사장 문 회성
하천명	한강
접용위치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75-1번지 산 성동구 자양동 60번지 선관
접용면적	3,412 ㎡
접용목적	가스관·매설
공작물네역	가스관·비관($\varnothing 600\text{mm}$) $L = 3,764\text{m}$ 터(유로부: 1,040 미터, 고수부: 2,724 미터)
접용기간	91. 3. 3 까지 (당초 이 날로부터 5년간)
조건	별첨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같이 조건을 부하여 허가합니다.

19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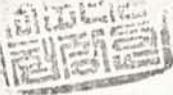
3.

서울지방국토관리청



0038

기 간 연 장 협 가 조 건

1. 하천의 접용 기간은 91·3·3까지로 하며, 계속 접용고자 할시에는 기간만료 1개월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간연장 허가를 득하여야 함.
2. 본 공작물의 유지관리는 피해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본 접용으로 인하여 인근 및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할시에는 피해가자가 전담책임 해결 및 보상 하여야 함.

3. 피해자는 당초 협약, 준공면허 사항 및 조건을 준수 하여야 함.
4. 공익 또는 공공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피해자가 상기 사항 및 제반 지시사항과 하천관제법령을 위반 하였을 시에는 본 협약을 취소하거나 조건을 변경 추가 할수 있으며, 취소시에는 피해자 부담으로 본 시설물을 철거하고 하천을 원상복구 하여야 함.


0039